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의 안 번 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| 의<br>결<br>사<br>항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20 . .<br>(제 회) |                  |

세 계 무 역 기 구 협 정 등 에 의 한  
양 허 관 세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 | 국무위원 홍남기<br>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0. .        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전

## 1. 의결주문

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「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」 개정(‘21.1.1일 시행)에 맞춰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및 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가.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가의 일부 개정

- \* 「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생용 마스크 등(6307.90호), 터치스크린(8537.10호),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 등(9032.89호) 품목번호 신설

나.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3의 가, 다, 라의 일부 개정

- \* 「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생용 마스크 등(6307.90호), 터치스크린(8537.10호),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 등(9032.89호) 품목번호 신설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생략

2) 입법예고(2020. 10. 20. ~ 11. 30.)

대통령령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##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

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가, 별표 3의 가, 별표 3의 다 및 별표 3의 라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양허관세 등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의 가, 별표 3의 가, 별표 3의 다 및 별표 3의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팀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| (044) 215 - 4462 |